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구 미 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는 반도체특화단지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동시에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국방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출연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6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 대표자 : 원장 오상록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4) 출연금액 : 10.5억원

※ 1차년도('26. 6월 ~ '27. 5월) 사업비 25억(도 4.5, 시 10.5, 민자 10)

5) 출연금 사용처 : (경북·구미 - KIST)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 교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나. 시범사업 개요

- 1) 추진기간 : '26. 6월 ~ '29. 5월(3년간)
- 2) 추진장소 : 경북 구미시
- 3) 총사업비 : 75억원(경북도 13.5, 구미시 31.5, 민자* 30) * 민자 : KIST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6년	'27년	'28년
계	75	25	25	25
도 비	13.5	4.5	4.5	4.5
시 비	31.5	10.5	10.5	10.5
민 자	30	10	10	10

- 4) 운영과제 : 국방 반도체 분야 3개 과제 및 사업관리
- 5) 주관·공동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 6) 주요 사업내용

- 초격자 화합물반도체 센서 모듈 기술개발
- 비냉각형 볼로미터 기반 열상 센서 개발
- GaN 기반 전력증폭기 기술개발
-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7)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5. 9. 2. : (경북·구미-KIST) 국방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25. 9. ~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제출
- '26. ~ '29. : 공동 시범사업 추진(36개월)
- '29. ~ '30. : 지역조직 설치·운영 계획 제출(시범사업 종료 후 24개월 이내) 및 타당성 조사 수행(7개월 소요)
- '30. 1. ~ : 지역조직(경북분원) 설치 추진

다. 출연의 필요성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반도체 및 관련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통해 지역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 2) 향후 KIST 경북분원 설치를 추진하여 반도체·방산 등 지역 전략 산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실질적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라. 기 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황

설립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전화번호 : 02-958-5114
				홈페이지 : www.kist.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6. 2.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연구기관) - 1989. 6. KAIST와 분리·독립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 2003. 5. KIST 강릉분원 설립 - 2008. 1. KIST 전북분원 설립 등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현황 (‘25.7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학생연구원
	3,079명	944 명	912 명	1,223 명
임 원 (‘25.6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 장	오상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 원장(‘24. 3~) - KIST 강릉분원장(‘14~‘1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 전문위원장 (‘11~‘14) 	3년
주요사업	국가핵심 R&D 과제수행, 산업계 협력 및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요사업 : 133,537 백만원 - 정부수탁사업 : 187,938 백만원 - 민간수탁사업 : 20,381 백만원 			
연간예산	445,201백만원 * 정부직접(출연) 217,613 백만원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가R&D기획(원천기술개발) - 연구분야 광범위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 표] <개정 2024. 1. 26.>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한국천문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 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 가. 첨단·지식기반·뷰티·탄소 및 물산업
 - 나. 부품·소재산업
 -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사업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3. 생략
4. 나노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사업의 공동 추진) ①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정보화사업
 4.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
 5.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출연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경북·구미-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시범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연구개발비(3개 과제) 총 75억원
(경북도 13.5, 구미시 3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합계
세출	2,500	2,500	2,500	7,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합계
도비	450	450	450	1,350
시비	1,050	1,050	1,050	3,150
민자(KIST)	1,000	1,000	1,000	3,000
합계	2,500	2,500	2,500	7,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반도체방산과 반도체정책팀 박정선(☎480-60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총계	7,500,000	
공동 시범사업	7,500,000	○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 6,900,000 - 초격자 화합물반도체 센서 모듈 기술개발 : 1,800,000 - 비냉각형 볼로미터 기반 열상 센서 개발 : 2,700,000 - GaN 기반 전력증폭기 기술개발 : 2,400,000 ○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 600,000

소관부서		반도체방산과
입 안 자	과 장	전 명 성
	팀 장	임 진 환
	담 당 자	박 정 선 (480-6032)